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631

발의연월일: 2022. 5. 17.

발 의 자:유상범·권은희·김기현

김미애・金炳旭・김상훈

김석기 • 김승수 • 김영식

김예지 · 김태호 · 김학용

김형동 • 류성걸 • 박대수

서병수 · 서일준 · 서정숙

성일종 • 송언석 • 신원식

유경준 • 유의동 • 윤두현

이용호 • 이태규 • 전주혜

정경희 • 정점식 • 정진석

정희용 · 조경태 · 조수진

조태용 · 최연숙 · 최형두

태영호 · 하영제 의원

(38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에서 연령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연령의 '표시'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음. 그로 인해 우리 사회의 공적 관계에서는 '만 나이'가 사용되고 있는 반면, 일상생활에서는 이른바 '세는 나이'(출생일부터 1세가 되고, 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1세씩 증가시키는 나이 계산·표시 방법)가 주로 사용되고 있어. 사회

적으로나 법적으로 적지 않은 혼동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령 계산의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사법관계에서 연령은 '만 나이'를 의미한다는 점을 일반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법(私法)의 기본법인 「민법」에 연령은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그간 발생하였던 사회적·법적 혼동 및 분쟁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58조 등).

법률 제 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8조(연령의 계산과 표시) ① 연령의 계산은 만(滿) 나이로 한다.

② 만 나이는 출생한 날을 포함하여 계산한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월 수로 표시한다.

제807조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1061조 중 "滿17歲"를 "17歲"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58條(年齢의 起算點) 年齢計	제158조(연령의 계산과 표시) ①
算에는 出生日을 算入한다.	연령의 계산은 만(滿) 나이로
	<u>한다.</u>
	② 만 나이는 출생한 날을 포
	함하여 계산한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월 수로 표
	<u>시한다.</u>
제807조(혼인적령) <u>만 18세</u> 가 된	제807조(혼인적령) <u>18세</u>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第1061條(遺言適齡) 滿17歲에 達	第1061條(遺言適齡) <u>17歲</u>
하지 못한 者는 遺言을 하지	
못한다.	